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및 발의경과

○ 의안번호 : 3244

○ 발 의 자 : 채유미 의원(찬성의원 9명)

○ 발 의 일 : 2022년 5월 25일

○ 회 부 일 : 2022년 5월 27일

2. 제안이유

○ 서울형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구성된 서울시 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를 조례에 규정하고,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"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"란 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의함(안 제2조 제2항 신설).
- 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 제 4호 신설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

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22. 6. 2. ~ 6. 10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형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구성된 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를 조례에 규정하고,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	
제2조(정의) ① ~ ③ (생 략)	제2조(정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
<u> </u>	④ "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"란	
	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	
	<u>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.</u>	
제4조(지원 범위) ① ~ ③ (생 략)	제4조(지원 범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
<u> 〈신설〉</u>	④ 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	
④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	⑤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	
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

○ 서울형주민자치회는 관련 법령('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환에 관한 특별법 제27조)과 조례('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, ('이하' 조례))가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, 조례 제3조에서는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정책을 수립·시행하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.

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 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- 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

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관련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※ 서울시에서는 2017년도부터 성동구 등 4개 자치구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 기준 22개 자치구 261개동에서 '서울형 주민자치회'를 운영중에 있음.

[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현황] : 22개 자치구 261개동 시행 중

- **2017년 시행 4개구** : 61개동('17년 26개동, '19년 20개동, '20년 15개동)
 - '17년: 성동(8), 성북(2), 도봉(6), 금천(10)
 - '19년 : 성동(9), 성북(8), 도봉(3)
 - '20년 : 성북(10), 도봉(5)
- O **2018년 시행 11개구** : 145개동('18년 55개동, '20년 85개동, '21년 7개동)
 - '18년: 종로(3), 동대문(5), 노원(6), 은평(5), 서대문(5), 마포(5), 양천(5), 강서(5), 동작(5), 관악(6), 강동(5)
 - '20년 : 동대문(9), 노원(13), 은평(11), 서대문(9), 양천(6), 강서(15), 동작(10), 강동(12)
 - '21년 : 양천(7), 종로(▲2)
 - ※ 2단계 추진 종로구 2개동(평창,혜화) 주민자치회 2기 미구성('21.5월~)
- **2019년 이후 시행 7개구** : 53개동('19년 35개동, '21년 18개동)
 - '19년 : 용산(5), 광진(5), 중랑(5), 강북(5), 구로(4), 영등포(5), 송파(6)
 - '21년 : 광진(5), 중랑(2), 구로(4), 영등포(7)

- 또한, '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'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 공론회장을 활성화하고,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,
 - 지원범위를 강행규정으로 하지 않고, 임의규정으로 신설하여 서울시의 자유재량 여지를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- 다만, 주민자치회 관련 7개 자치구 조례에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는 바, 지원에 따른 분쟁 발생 소지와 협력관계 구축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아직까지는 "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"가 비영리단체 등록 요건(회원수 100명 이상)¹)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의단체인 바, 법정단체가 아닌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유사 임의단체 지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
연번	자치구	조례상 명칭	조례상 목적
1	성북구	주민자치협의회	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심의
2	도봉구	주민자치협의회	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

^{1) 「}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2조(정의) 이 법에 있어서 "비영리민간단체"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. 〈개정 2016. 5. 29.〉

^{1.}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

^{2.}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

^{3.}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·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,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지 아니할 것

^{4.}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

^{5.}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

^{6.}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

3	은평구	주민자치협의회	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심의	
4	강서구	주민자치협의회	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심의	
5	동작구	주민자치협의회	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	
6	송파구	주민자치협의회	주민자치회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	
7	강동구	주민자치협의회	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자문	

- 한편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제29조 제3항²)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시기·구성·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입법보완 측면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됴됨.
- 행정국은 주민자치회는 22개 자치구 261개동에서 시행되고 있고, 이미 시범사업의 규모를 초과 달성한 상황이며, 연구과제 (2022.2~8월)를 통한 주민자치에 대한 방향성 재정립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과 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 신설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.
 - ※ 행정국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성과부재와 입법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민 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주민자치 발전방향을 마련하고자 연구과제를 진행중에 있음.

수석전문위원 김태한	전 문 위 원	김 정 덕
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

^{2) 「}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